

검 증 신 청 서

사 건 2000가단0000(본소), 2000가단0000(반소)

원 고(반소피고) 〇〇〇

피 고(반소원고) (주)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(반소피고)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신청을 합니다.

- 아 래 *-*

1. 검증장소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피고회사 본사 사무실)

- 2. 검증의 목적물
 - ○피고가 원고에게 20○○. ○. ○. 우편으로 송부한 이 사건 웹사이트 및 관리프로그램의 검수용 컴팩트디스크(CD)
 - ㅇ원고 보관중이며 검증기일에 현장에서 제출할 예정임
- 3. 검증에 의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사항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통보 후 피고가 우편으로 송부한 위 검증 목적 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완성품이 아니라는 사실
- 4. 첨부 : 검증장소약도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원고(반소피고)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○민사단독 귀중

제출법	원	수소법원	관련조문	민사소송법 제364: 366조	조 내지 www.
제출부수	수	신청서 1부			
검 증 의	븨	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, 현상을 검			
의 의	긔	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임.			
검 증 의	의	검증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검증물이라고 하며, 검증은 자동차 사			
대	상	고현장, 각종 공사장 또는 기계로 인한 사고 현장 등			
		현장검증을 함에 있어?	서는 검증에 필	요한 물건이나 사진	기 등을 미리
 7 E	타	준비하여야 함. 법원이 검증을 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항, 제342조 제1항).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